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위반건축물표지

허가(신고)번호		
위반건축물	건축주	공사시공자
	위치	
	착공일자 년 월 일	
	주용도	부속용도

위반사항

조치사항

이 건축물은 「건축법」제(　　)조를 위반한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제7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• 광역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

•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「건축법」제113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.

600㎜×900㎜